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클러스터 및 분양사무소 대표번호(1533-0589) 상담사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주제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제	시공사
상 호	(주)동일코퍼레이션	(주)동일토건
법인등록번호	110111-6137495	110111-0629026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층 402호(두정동, M프라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두정동, 엠프라자 4층)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 호	주식회사 길종학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식회사 토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대영기술단	해성종합기술 주식회사
금 액	2,122,740,400원	500,521,000원	737,294,000원	165,000,000원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자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8.18.(화), 2026.08.19.(수)	2026.08.20.(목)	2026.08.21.(금)	2026.08.27.(목)	2026.08.29.(토) ~ 2026.09.02.(수)(5일간)	2026.09.07.(월) ~ 2026.09.09.(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PC·모바일) 청약홈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20091호(2026.08.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589세대 중 일반분양 589세대 [특별공급 460세대(기관추천 61세대, 다자녀가구 61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44세대, 신생아 61세대, 이전기관 종사자 1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이전기관 종사자	계				
2026 000371	01	059.9390A	59A	59.9390	21.0676	81.0066	46.8635	127.8701	40.9568	175	18	18	27	6	13	18	35	135	40	9		
	02	059.8977B	59B	59.8977	20.7410	80.6387	46.8312	127.4699	40.9286	112	12	12	17	4	8	12	23	88	24	6		
	03	059.5027C	59C	59.5027	21.1392	80.6419	46.5225	127.1644	40.6586	38	4	4	6	2	3	4	8	31	7	2		
	04	071.2889A	71A	71.2889	24.4538	95.7427	55.7375	151.4802	48.7122	38	4	4	6	2	3	4	8	31	7	2		
	05	071.8211B	71B	71.8211	24.0670	95.8881	56.1537	152.0418	49.0760	78	8	8	12	3	6	8	16	61	17	4		
	06	084.7577A	84A	84.7577	28.1434	112.9011	66.2682	179.1693	57.9158	148	15	15	23	5	11	15	30	114	34	8		
	합계										589	61	61	91	22	44	61	120	460	129	31	

■ 공급금액				(단위 : 세대/원)
주택형(타입)	공급세대수	최저	최고	
59A	175	383,000,000	416,000,000	
59B	112	376,000,000	408,000,000	
59C	38	370,000,000	397,000,000	
71A	38	444,000,000	478,000,000	
71B	78	443,000,000	476,000,000	
84A	148	492,000,000	534,000,000	

■ 납부일정					
계약금(5%)		중도금(60%)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1.25	2027.05.25	2027.09.27
중도금(60%)				잔금(35%)	
4차 (10%)	5차 (10%)	6차 (10%)			
2028.01.25	2028.05.25	2028.09.25		입주 시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 요건 ※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본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9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정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20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청약통장 불필요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 산업단지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용인패키징디자인일반산업단지, 용인통상일반산업단지, 한컴일반산업단지, 용인농서 일반산업단지, 용인제일하이오일반산업단지, 용인지공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용인지공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원삼일반산업단지
청약신청 방법	■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 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위 내용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하위로 한 경우에는 사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마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금액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⑤무주택자 우선공급 → ⑥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⑥추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거주자)

■ ③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낙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⑤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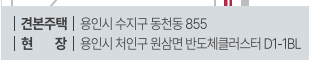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동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 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입주 시 잔금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대출공용기관 및 심사 기준에 따라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시 기준주최 차분 및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서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입주자모집공고(원판)가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운영시간	10:00 ~ 18:00(업무 종료시간 기준)
	운영기간	분양종료 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533-0589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s://용인동일하이빌파크밸리.com